

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5. 13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산림과장 남동선)

- 위치 및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내지 제5조)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내지 제7조, 제10조)
 - 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 : [별표1]
 - 시설사용(입장)권 : [별표2]
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
(안 제8조 내지 제9조, 제11조)
 -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: [별표3]
-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,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
(안 제12조 내지 제14조)
-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내지 제23조)
- 기타 제반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 내지 제25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, 기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입장료와 함께 숙박시설 사용료를 성수기,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
 - 사용료 전액 감면 및 30%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
 - 효석문학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·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음
- 향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도 함께 수립하면서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.